

| 월곡 푸르지오 일반분양 대출 안내 |

대출처	세대별 대출한도	대출조건		
		대출금리 (2008.3.19 CD유통수익률 기준)	대출기간	대출시기
하나은행	분양가의 40%이내	年6.01% (3개월CD변동금리)	3년 이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 중도금 납부시 대출실행 ▶ 매차수 중도금납부시
하나캐피탈	분양가의 10%이내	年8.26% (3개월CD변동금리)		
국민은행	분양가의 40%이내	年5.61% (3개월CD변동금리)		

- ※ 하나은행은 하나캐피탈과 연계하여 중도금 대출 진행
- ※ 분양가 6억원이하 세대의 경우 3억원 한도내에서 DTI 충족시 분양가의 최고 70%까지 대출가능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상품을 신청할 수 있음(계약시 별도안내)
- 단, 국민은행, 하나은행(하나캐피탈) 중도금대출 상품과 중복신청 불가
- ※ 분양가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한도는 DTI 40% 적용(주택투자지역)
- 대출 미신청 및 개인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분양금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납부
- 입주(담보대출전환 포함)시 대출한도는 금융기관의 대출규정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행 월곡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 **대우건설**

문의전화 **02)943-8868** 푸르지오 www.PRUGIO.com

■ 건축 연면적: 96,926.78㎡ ■ 지번: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산 2-11 외 12필지 ■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자금관리: 시행, 시공 공동관리
 ※ 본 홍보물상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과 관련된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PRUGIO

월곡 푸르지오
PRUGIO
 | 분양안내 |



내일의 프리미엄



월곡 푸르지오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정책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개발과 - 3546호(2008. 03. 21)로 입주자모집승인을 득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신2-11번지 일대 13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지상 7~14층 15개동 아파트 총174세대 중 일반분양 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79,72A : 30세대, 79,72B : 2세대 포함]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세 대 별 계 약 면 적(㎡)						대지 지분 (㎡)	총수	층구분	공급 세대수	세대당 분양가격			계 약 금					중 도 금	잔금
				세대별 공급면적		계	세대별 기타공용	합 계	토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시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전용	주거공용												2008.06.09	2008.10.26	2009.03.09	2009.09.27	2009.12.09		

민영주택	21811-01	2008000153(01)	79.72A	59.65	20.07	79.72	37.46	117.18	39.02	14	1층	17	123,750	139,750	263,500	26,350	2008.06.09	2008.10.26	2009.03.09	2009.09.27	2009.12.09	26,350	26,350	39,525	39,525	26,350	26,350	79,050	79,050
				2층	13	128,700	145,300	274,000	27,400	27,400	41,100	41,100	27,400	27,400	82,200														
	21811-02	2008000153(02)	79.72B	59.65	20.07	79.72	37.46	117.18	39.02	14	1층	1	123,750	139,750	263,500	26,350	26,350	39,525	39,525	26,350	26,350	79,050	79,050	79,050	79,050	26,350	26,350	79,050	79,050
				2층	1	128,700	145,300	274,000	27,400	27,400	41,100	41,100	27,400	27,400	82,200														
	21811-03	2008000153(03)	140.11	114.61	25.50	140.11	71.96	212.07	74.75	14	1층	2	267,900	302,600	570,500	57,050	57,050	85,575	85,575	57,050	57,050	171,150							
											2층	2	275,400	311,100	586,500	58,650	58,650	87,975	87,975	58,650	58,650	175,950							
											3층	4	282,450	319,050	601,500	60,150	60,150	90,225	90,225	60,150	60,150	180,450							
											기초층	17	296,300	334,700	631,000	63,100	63,100	94,650	94,650	63,100	63,100	189,300							
														중도금 납부 일차별 진행공정율	22%	38%	53%	70%	92%										

(단위 : 원)

주 택 형 (㎡)	㎡ 단가	확장면적 (㎡)	공급가액 (V.A.T포함)	확장부위	비고
79.72A	562,500	20.64	11,610,000	거실, 침실2, 침실3, 주방, 침실외부청호, 세탁실 창호	-
79.72B	554,264	20.64	11,440,000	거실, 침실2, 침실3, 주방, 침실외부청호, 세탁실 창호	-
140.11	498,665	33.71	16,810,000	거실, 침실2, 침실3, 침실4, 주방, 침실외부청호, 세탁실 창호	-

- 발코니 확장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 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비용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옵션과 관련된 마감재 변경 및 재료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호협약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계약은 필수사항이 아님(아파트계약과 별개이며 입주자 개인별 계약 체결예정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설비 및 인터리어 설계상 연관이되어 개별 아이টে일별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형별 패키지로만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할 금액임.

■ 일반·특별분양 공동사항

- 본 아파트는 건보주택 미시공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www.prugio.com)를 통해 세대 마감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체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시업주체인 조합의 재채승인과정에서 성능개선을 위하여 등급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회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공시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발코니 확장공사는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및 운동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 사업부지에서 기부채납부지도로, 공영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연면적과 비주거연면적 비율에 의한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조세(종합토지세 등은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정산할 예정임(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임))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단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절차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님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정일 이후 계약자 명의로 부과되는 일체의 비용(은행이자 등은 입주자 잔금납부 시 정산할 예정임
-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칭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용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부도(파산 등으로 보충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전용면적을 포함한 모든 면적은 인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소유권 이전시까지 전매가 제한됨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준칙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방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상환방법 : 형별면적(㎡)÷3.3068 또는 형별면적(㎡)×0.3025)
 - ※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주택투기지역(2006. 10. 27부터 시행)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됨
 -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인터넷, KB모바일 청약신청안내

구 분	공 통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 대상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1,2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3순위 : 행정개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으신 분(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KB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 방법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WiP폰 기종만 가능)	-
	KB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 청약지침 ▶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이용 방법	KB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SKT : Mbank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 3차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건설량의 3% 범위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03. 2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내에서 특별분양함
- 청약에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는 제외
- 자녀수에는 입양자도 포함됨(입양증에 있는 데야는 포함이 안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던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차녀 모두 민방식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이어야 하며, 3차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 3차녀 특별공급 배포표에 의한 접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구 분	계	79.72A㎡	79.72B㎡	140.11㎡	비 고
서 울 시	1	-	-	1	-
경 기 도	1	-	-	1	-
합 계	2	-	-	2	-

- 3차녀 특별공급 세대 : 일반공급 57세대 중 3%인 2세대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비율(수 비율 등을 2인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quot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에통계청 통계자료 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 따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각각 공급함
- 특별공급 신청일시에는 인어물결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할만큼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에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3차녀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3차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우선순위 배정표 상의 차순위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계					
자녀수 (1)	미성년자녀	40	4차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미만인 경우만 포함
		35	3차녀	35	
세대구성(2)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5	1명	5	
		10	3세대 이상	10	
무주택기간(3)	20	5	2세대	5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15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15	
		20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무주택기간 5년 미만	20	
당해 시·도 거주기간(4)	20	10	10년 이상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15	5년 이상~10년 미만	15	
		10	1년 이상~5년 미만	10	
			5	1년 미만	5

(1)·(2)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간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감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무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점기준표(대우센터빌딩 2층 월곡 푸르지오 분양 사무실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간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각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내에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제3차 대리신청시 추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임장(대우센터빌딩 2층 월곡 푸르지오 분양 사무실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일반공급(주택의 공급대상)

-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03.2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재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기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가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 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당 주택부지는 투기과열지구내에 위치하여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자(2002. 9. 5 이후 가입자에 한함), 1세대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재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는 1순위 청약이 제한 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당 주택에 공급 신청할 수 없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3항)
- 본 주택에 청약관련 예금통장으로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함(1인 2인 이상 신청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 2, 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시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요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예약을 받을 수 있음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주택형	청 약 관 련 예 금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	1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권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 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청약자후에 가입하여 2권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08. 04.01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접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2you.com) - KB모바일 내일신문 kbank Bankon	<ul style="list-style-type: none">•접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소재 대우센터빌딩 2층 월곡 푸르지오 분양 사무실 내일신문 신문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0에 해당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개2순위로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청약사실 포함)된 세대에 속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 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 2002.9.5이후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 9. 5 가입자 포함)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순위 청약 가능함				
주택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 가정제로 청약접수)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각 주택 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 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분 1순위자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2008. 04.02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접수장소 : 국민은행, 인터넷, KB모바일 •접수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08:3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사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 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2008. 04.03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접수장소 : 국민은행, 인터넷, KB모바일 •접수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08:30~18:00	

-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날짜, 장애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이 불가함
-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만 청약이 가능함(참구 접수시간 09:30~16:30)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정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선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자책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때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 분	내 용
일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선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아래의 '감점 선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감점 선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점수 선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으로 산정함

가정집수 산정기준표					
가정항목	가정상한	가 정 구 분	점 수	가 정 구 분	점 수
① 우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② 부양 가족수	35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3명	20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 점	84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제3항, 제12조 제3항, 제5항, 제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정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함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p>				

○ 감점 산정기준

구 분	감 점 항 목	기 준	소유주택수	감점점수
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가정항목별 적용 기준

가. 우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자가주택 소유자를 우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자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자가주택을 처분하여 우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우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자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단, 2007.0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우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우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주적분에 혼인신고일도 등재된 날부터 우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우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우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우주택기간을 산정함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가시한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정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리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자를 취득한 사실이 반영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외에도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수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판매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자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자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 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공공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자가주택 보유기간을 우주택 기간으로 인정함(경건1차 보유 특례)

- (현재, 소형자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자가주택' 1호 또는 1세대 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자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우주택자이며 종전 우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 우주택자) 종전에 소형·자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우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자가주택의 보유기간도 우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경과기간 및 요건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자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횡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는 가입일(예치금액 변경한 자는 변경일)로부터 2년마다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조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②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문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③ 청약자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신청 접수방법

• 공 통 : 총별·동별·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를 같은 날짜에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위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 : 청약신청지 전원 가점제 청약 점수를 원칙(입주자선택방법)가점제, 추첨제 방식 불거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 접수함(모든 청약 가점 접수함)으로

전환한다, 1순위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청약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자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횡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3 순 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85㎡이하 주택형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를 적용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를 통해 공급하며, 85㎡이상 주택형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제를 적용 우선 공급하고, 50%를 추첨제를 통해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시 미달 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일기(전산인서관, 인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해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청약신청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 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공급신청서 구비 사항(창구 청약자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자 : 국민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1, 2순위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인정(1, 2순위에 한함) 또는 배우자,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인증서류 추가(비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재직계준·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 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서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통(신청접수처에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전주택형	100만원	창구 청약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입수표 1매로 준비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8.04.11) 이후 평일(시간 09:30~16:30)
• 환불장소 : 청약접수 한 국민은행 본, 지점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서)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인감도장(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단, 지정계약(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3순위 청약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3자녀 우주택자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우센터빌딩 2층 율곡 푸르지오 분양 사무실에서 특별공급 신청자의 임의하에 동·호수를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선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 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과정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개약세대 또는 계약유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개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예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일시 : 정당 당첨자 : 2008. 04. 16~2008. 04. 18(3일간, 시간 : 10:00~16:30)
• 계약체결장소 : 대우센터빌딩 2층 율곡 푸르지오 분양 사무실

※ 정당 당첨자 계약요청 이후 미계약대발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동장 재사용 불가 및 해당층 제한 등이 적용됨)

※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형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형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무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국민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액(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금 용 기 관	계 좌 구 분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국 민 은 행	계 약 금	505801-01-149842	(주)대우건설/율곡1차개발조합
국 민 은 행	중도금/잔금	505801-01-149855	(주)대우건설/율곡1차개발조합

■ 계약시 구비 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의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입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정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초본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주민등록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통))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당첨자 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자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주택공사가격 증명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우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준·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상기 제출명서들은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 7. 1 주민등록비서형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동·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기간 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과대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감정합의(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 1·2·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해당층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하며, 금융결제원에 5년

이내 해당층부터 검색하고 특별공급 및 1순위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금융결제원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한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해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초지함

• 주민등록번호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인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이체절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자집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우선 관계없이 거주자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함

• 동일 세대내에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에 의거)

• 입주계약시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아파트 배차·구조 및 동·호수층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입주예정일** : 2010년 04월(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 지정일에 납부해야함(단,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실, 주민운동시설 등

■ **중도금 용자조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을 계약장소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용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은 분양금액의 40% 범위내에서 대출 예정이며, 대출한도는 총부채상환비율(DTI)적용으로 인하여 개인에 따라 대출금액이 차이가 있으나 이점 각별히 유의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로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하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 **인터넷, ARS, KB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사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시스템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자접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l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이용기간	• 2008.04.10 ~ 2008.04.19 (10일)	
	전화 (ARS)	이용방법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KB 모바일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	
	이용기간	• 2008.04.10 ~ 2008.04.19 (10일)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문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 2008.04.10 (08: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점검**

-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배,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한 입주자사전점검방법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한「입주자사전점검운영요령」에 따름

■ **유의사항**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건설교통부 지정 2002. 9. 6)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 분양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기 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함
- 청구 청약자께서는 주택공급신청사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명] 또는 [청란은 공급면적을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명)]으로 기재하여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평형면적(㎡) × 0.3025 또는 평형면적(㎡) ÷ 3.3058)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공급면적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동일한 청약관련 저축 등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 주택을 공급받았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주택이 2개 이상이 있을 경우 1개 주택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서 모두 무효처리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공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공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선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한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 선정(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할
- 보증수금 및 이전등기는 입주당과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음(특히 대지 이전등기는 입주당과 관계없이 자연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제 입주할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 목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절차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하차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별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체의 품질, 품격,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모양은 측량결과와 부지중감 등 각종 조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재확인 바람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 증 서 번 호	보 증 금 액 (단위: 원)	보 증 기 간
제 01212008-101-0001400호	19,220,8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를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항 제호 목록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전세지분, 전경, 내관 기타 이와 비슷한 사항으로 주택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주택무자가 대출받지, 차용, 이종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수에는 변경된 납부 계획을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인 때,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인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말한다)이후에 납부하여 할 입주금을 기준공정 전에 납부한 입주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 업 주 체	시 공 회 사
상 호	월곡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1-183	서울특별시 중구 내대문로 57가 541
대 표 이 사	나 광 수	서 총 욱
등 록 번 호	114471-0002359	110111-2137895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VAT 별도)
건 축 감 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건축	1,638,409,691원
전 기 감 리	(주)지화기술단	292,000,000원
통 신 감 리	(주)지화기술단	68,000,000원
소 방 감 리	금성소방산업(주)	220,000,000원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미시공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www.prugio.com)를 통해 세대 마감 등이 안내되어지므로 청약자께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대 평면도 및 마감 자재, 단지내 공용 부분 등을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셔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공급회사(02-981-651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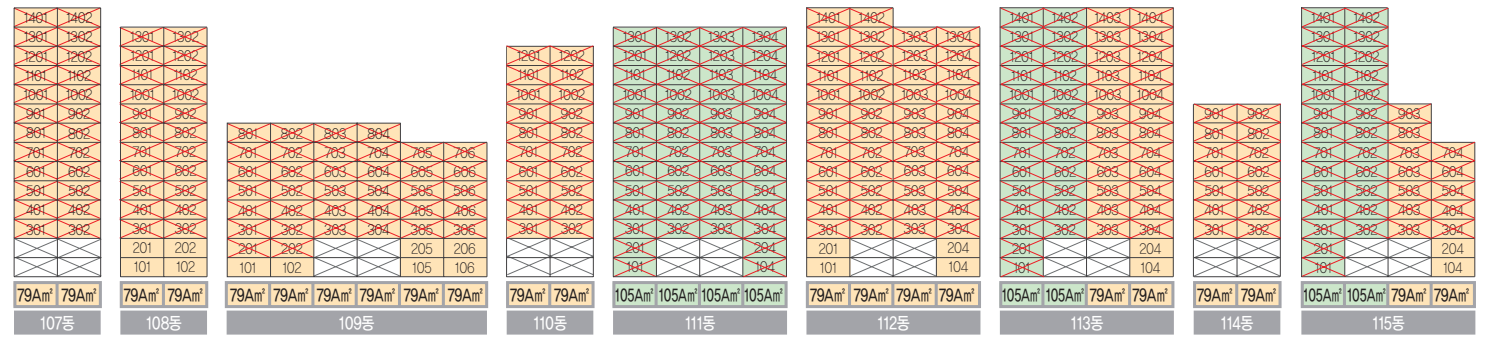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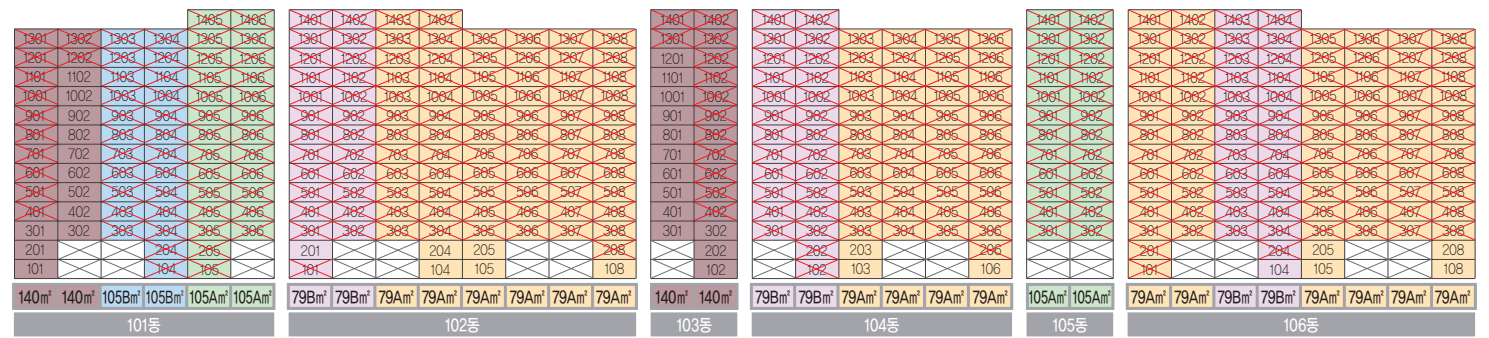
■ **조감도**



총 714세대 중 일반분양 57세대

- 79Am² · 412세대(일반분양 30세대)
- 79Bm² · 78세대(일반분양 2세대)
- 105Am² · 150세대(조합원분양)
- 105Bm² · 24세대(조합원분양)
- 140m² · 50세대(일반분양 25세대)
- 필로티

■ **동 · 호수 배치도**



□ 일반 분양분 ◀ 조합원 분 ⊠ 필로티 및 피트

■ **UNIT PLAN (확정형)**

79Am² | 412세대(일반분양 30세대)

79Bm² | 78세대(일반분양 2세대)

140m² | 50세대(일반분양 25세대)



*본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일러스트(그림)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마감재 이외의 전시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99A/Bm², 105A/Bm², 140m²는 비 법정 단위 표기로 환산할 경우 24평방, 32평방, 42평방에 해당됩니다.